

초

점

기

획

❶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위상과 기능

목 차

- I. 서론
- II.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성격 및 출현배경
- III.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위상과 비중
- IV.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특성
- V. 결론

李長載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

I. 서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연구개발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정부적 실체의 비영리 연구조직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연구 조직으로는 연구개발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리고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을 들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의 참여, 연구개발의 중립성 및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민간연구 기관은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 체제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연구개발주체로 향후 잠재력이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고는 새로운 국제기술환경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구개발 잠재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들 연구주체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와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Ⅱ.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성격 및 출현배경

1.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성격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① 비영리(Non-profit)를 목적으로 하고 ② 정부적 실체의 조직이 아닌 ③ 연구개발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④ 법적으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법인격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비영리 법인 중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타 비영리 민간법인 1)과 구분되며, 민간조직의 성격을 가진 비정부적 실체라는 측면에서 정부조직이나 정부적 실체의 조직인 비영리 공공연구기관과도 다르다. 2)

따라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법인)³⁾은 '연구개발활동이라는 공공목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정부적실체로 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이 기타 비영리 법인과 구분되는 기준은 연구개발활동이 주된 목적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⁴⁾

여기서 연구개발활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요령에 나타난 과학기술처고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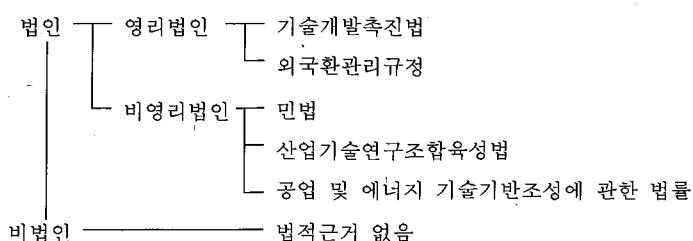
1994-16호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전미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이란 이론적 작업분석, 탐구와 실험, 기술의 적용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연구자에 의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실험, 시험, 연구시설의 설립 및 설치, 연구데이터의 상호교환, 연구개발 위탁계약 및 특허라이센스가 포함된다.

이와같이 연구개발활동은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있으나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이라는 개념은 연구개발활동과 시험조사사업, 품질평가, 기술교육, 기술협력 등과 이와 관련된 기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에는 첫째,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연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목암생명공학연구소 ('84년 4월 녹십자에서 설립), 산업과학기술연



〈그림 1〉 연구소 설립의 법적 근거

구소('87년 2월 포항제철에서 설립), 생산공학연구소('90년 4월 동국제강에서 설립), 한국정보유통연구센터('91년 5월 설립), 한국계면공학연구소('91년 12월 설립), 한국세포주연구센터('92년 12월 설립), 한국컴퓨터기술연구소('92년 10월 한일컴퓨터학원 설립) 등이 있다. 둘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대우고등기술원, 두산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총 57개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있다. 세째, 공업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민간 생산기술연구소로 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섬유기술연구소, 신발연구소 등 8개의 민간생산기술연구소가 있다.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출현배경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출현배경은 크게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와 민간기업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형태로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법인 연구기관의 출현배경이며, 둘째, 최근 기술개발의 종합화, 복합화를 반영하는 협동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출현하게 된 연구조합 형태이다.

먼저, 민간법인 연구기관의 출현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민간연구기관은 1840년대 중반에 설립된 독일의 전기·전자분야의 지멘스 기업이 설립한 지멘스연구소, BASF 연구소(1800년대 중반 독일), HOECHST 연구소(1863년 독일), 웨스팅 하우스 연구소(1886년 미국), 필립스연구소(1891년 네델란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산업체연구소의 설립붐과는 별도로 1925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기업인이었던 Gorden Battelle 이 유언으로 남긴 재산을 기금으로 한 비영리 형태의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바텔기념연구소는 정부나 기업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위치에서 '기술의 실용화(Putting Technologies to Work)'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 8,000여 명의 연구원들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워싱턴주의 리처랜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제네바 등 4개 연구소 및 세계 30여개 국에 있는 지사를 통해 매년 5,000여 과제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약 6억 불의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다.⁵⁾

바텔기념연구소의 설립 이후 미국에서는 SRI International(Menlo Park, 캘리포니아), Gulf South Research Institute(Baton Rouge, 루이지애나) 등의 비영리민간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정부와 산업체에서 제공된 보조금과 연구수탁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⁶⁾

일본의 경우,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민영연구기관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며, 각종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연구소와 업계와 관련 기업들이 결성하여 공동실험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협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민영연구기관은 과학기술청 산하에 40여개, 통산성 산하에 120여 개 등 각 성청 산하에 민영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있다.⁷⁾ 프랑스의 경우 파스퇴르 연구소와 쿠리 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연구소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기업을 의뢰에 의해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각종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개발연구와 상품화 연구 등 하류단계(Down stream)의 기술개발과 단기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조사연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그들의 연구조직이나 시설에 대한 변화없이 이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을 통하여 대학이 수행하지 못하는 하류단계에서의 연구개발과 새로운 분야나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단기적인 조사연구를 위탁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 및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을 통한 대표적인 기술개발 사례로는 바텔기념연구소에서 개발된 세계 복사기 시장을 석권한 제록스기술의 개발 및 응용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민영연구기관들은 기업이 축적하기 어려운 특수한 영역의 기술지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조직으로 협동연구나 위탁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기업이 매우 중시하는 연구개발성과의 비밀유지(Secrecy)를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권리 를 보장해 주길 원하는 반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은 기업과 계약한 연구성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성향을 가진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비밀유지성향은 기업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장기연구에서부터 최단기에 걸친 다양한 규모의 연구개발 및 조사연구 활동 등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요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부담없는 파트너로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을 활용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 연구성과에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단기의 전문적 조사연구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 이러한 요인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과거 대학이 수행해 왔던 기업과의 연구계약 중 상당부분을 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조합 형태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을 살펴 보기로 한다.

협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립된 연구조합의 설립 역사는 1916년 영국에서 설립된 산업연구조합(Industrial Research Association)을 효시로 들 수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연구분야가 점차 세분화됨에 따라 하나의 기술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된 기술을 종합화, 체계화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각 기업은 단독연구보다는 상호간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협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연구조합은 국가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영국, 서독 등에서는 영구적 존립조직의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미국(연구개발 컨소시엄을 의미함)의 경우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연구를 수행하다가 연구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임

의 조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설립근거의 경우 한국,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의 연구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특별법이 아닌 회사법(Company Act)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다. 한국에서는 1986년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본에서는 1961년의 〈광공업기술연구조합법〉, 독일에서는 주정부의 〈조합설립법(Vereinsgesetz)〉, 미국에서는 1984년의 전미 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이 제정되어 연구조합의 근거법이 되고 있다. 또한 연구조합의 법인격도 국가에 따라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연구조합이 모두 비영리 법인연구기관으로 분류되나, 영국과 독일의 연구조합은 비영리 법인연구기관이나 일반교육기관, 주식회사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연구컨소시엄(Research Consortium)은 한정적 기업회사(Limited Partnership)의 법인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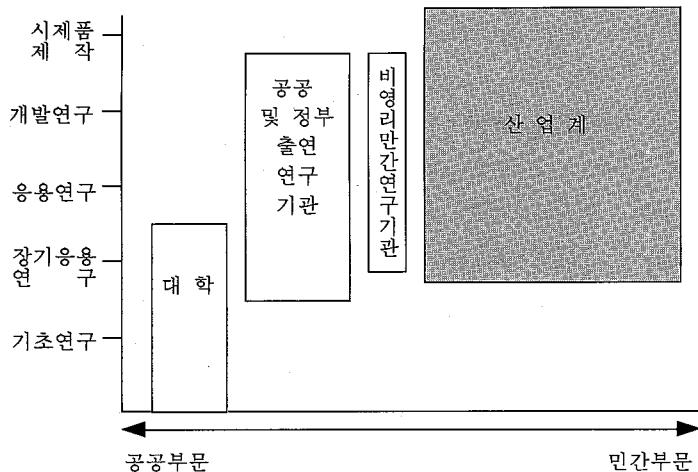
III.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위상과 비중

1. 국가연구개발체제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체제내에서 정부 등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중간영역을 차지하는 연구조직으로 정부와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를 계약을 통해 수행하거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경우는 협동연구의 매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먼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영역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해서는 민간부문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며, 기업이 수행하는 순수한 사적 이익을 위한 연구보다는 공익이 고려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그림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위상

개발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들은 응용연구단계에서부터 시제품개발에 이르는 단계의 영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성격은 공공과 민간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자체기금과 함께 정부, 민간단체, 기업으로부터 각종 보조금, 기부금, 연구계약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기업 혹은 비영리 재단과 같은 조직이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연구성과가 연구의뢰기업의 배타적 소유물(Exclusive Property)이 되는 전유성 연구(Proprietary Research)를 상당히 수행하게 되어 많은 국가에서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전유성 연구로 부터 발생되는 기관수입에 대한 조세부과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⁸⁾

한국의 경우 민법32조와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 연구기관은 기업출연에 의해 설립되어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⁹⁾ 일본의 민영 연구기관도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2.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비중

우리나라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3년말 현재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총액은 6조 1,530억 원으로 이 중 비영리 연구기관

은 총 16.9%인 1조 395억 원의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1994). 이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 8,355억 원을 사용하였고 기타 비영리법인(이하에서는 비영리민간법인, 여기에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모두 포함됨)이 2,040억 원을 기록하여 비영리 민간법인의 연구개발투자액은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법인의 연구개발투자 2,040억 원의 조달은 정부로부터 320억 원,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721억 원, 민간기업체로부터 134억 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자체조달 81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재원의 차립도는 40.0%로 나타나고 있다.¹⁰⁾

국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 민간법인연구기관,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시험검사소, 기타 종합병원(대학부속병원 제외한 총 276개 중 38개) 등 총 100개 법인이 포함된다. 비영리 민간법인이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활동비중의 추이는 1987년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여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법인의 숫자는 '86년 50개에서 '90년 67개로 증가하였고, '93년 현재 100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위 법인당 연구개발 사용액수는 '86년 2.58억 원에서 '93년에는 20.4억 원으로 동기간 동안 약 8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7년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이 급속히 성장한 이유는 '87년 2월에 설립된 산업과학기술연구소('93년

〈표 1〉 비영리 민간법인의 연구개발투자 비중(단위: 원, %, 개)

연도	총연구개발액(a)	비영리민간법인 사용액(b)	비중(b/a)	법인 개수
1986	1조 5,233억	129억	0.8 %	50 개
1987	1조 8,780억	644억	3.4 %	
1988	2조 3,474억	746억	3.2 %	57 개
1989	2조 7,051억	721억	2.7 %	
1990	3조 2,105억	881억	2.7 %	67 개
1991	4조 1,584억	770억	1.9 %	
1992	4조 9,890억	1,595억	3.2 %	
1993	6조 1,530억	2,040억	3.3 %	100 개

자료: 각년도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

현재 예산규모 555억 원)의 출범과 '86년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의 제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으로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92년 현재 국가 총연구개발 사용액은 127,882억 엔으로 이 중 민영연구기관 (우리의 경우 비영리법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비중은 5,434억 엔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민영연구기관 통계에는 연구조합의 연구개발 활동액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영연구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민영연구기관은 1981년 이후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89년을 정점으로 정부 계연구소로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연구기관 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¹⁾

일본의 연구개발투자는 '92년 현재 산업체가 74.8%, 정부가 8.7%, 대학이 12.2%, 민영연구기관이 4.2%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투자의 부담은 산업체가 77.0%, 정부가 18.0%, 대학이 4.3%, 민영연구기관이 0.5%, 외국으로부터 유입이 0.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영연구기관의 외부연구비에 대한 의존율이 88.0%로 타연구주체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표 2〉 일본의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투자의 부담과 사용비율('92년)(단위: %)

구 분	부담비율	사용비율
산 업	77.0	74.8
정 부	18.0	8.7
대 학	4.3	12.2
민영연구기관	0.5	4.2
외 국	0.1	-
합 계	100.0	100.0

자료: 94년도 일본과학기술백서

수 있다.

한편 일본의 민영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 투자액의 사용측면에서 차지하는 연도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에는 1.6%, '70년에는 1.1%, '80년에는 2.3%, '81년 3.6%, '85년 3.6%, '90년 3.6%, 그리고 '92년 현재 4.2%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이 1981년 이후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한 민영연구기관의 의미는 위탁 협동연구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기업이 축적해 오기 어려운 특수한 영역의 연구를 전문적으로 위탁연구 및 협동연구 형태로 수행하는 주체로서 일본의 민영연구기관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가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연구 개발활동비중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막스 프랑크 학술진흥협회나 프라운 호프 응용연구촉진협회 그리고 대규모 연구기관(GFE)

이 통계에 포함되는 독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총연구개발활동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부담비율 0.4%, 사용비율 0.8%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의 비중을 추정해 보았을 때 프랑스와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계 주요국가 중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비중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의 특성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바텔기념연구소와 같이 8,000여 명의 연구원을 가진 연구조직에서부터 불과 수명의 연구원이 소속된 소규모 연구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표 3〉 세계 주요국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 비중(단위: %)

국 가	부담비율	사용비율
한국('93년)*	1.5 (0.4)	3.3(0.8)
일본('92년)**	0.5	4.2
미국('93년)***	2.0	3.7
독일('91년)****	-	11.3
프랑스('90년)**	0.4	0.8
영국('92년)**	3.3	4.1

주) *: 비영리 민간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액수임. ()안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제외하여 추정한 액수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영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 액수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영연구기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포함됨.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합이며,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막스플랑크 학술진흥협회, 프라운 호프 응용연구촉진협회 및 대규모 연구기관이 포함됨.

자료: '94년 일본과학기술백서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나 국가연구개발체제내에있는 다른 연구개발 주체와 비교해 볼 때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주된 연구분야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주로 응용연구 및 개발단계를 담당하여 공공부문 및 국가전략분야에서 응용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상업적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연구소에 비해 중립적 위치에 있다. 특히,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 혹은 산업체 등 연구위탁자의 계약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므로 다양한 성격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특수한 전문분야 혹은 협동연구의 주된 수행주체로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영역의 탐색적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체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활용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주로 중단기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분야에서 초단기의 조사나 탐색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공식적 절차과정 등을 요구하는 판료제적 제약이 따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교육 혹은 강의부담을 가진 대학이 가지지 못하는 신속한 대응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연구위탁자가 연구비 규모를 연구과제의 성격 및 기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연구성과에 대한 비밀유지 여부측면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과는 달리 산업체와 유사한 정도의 높은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조직규범이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보다는 조직의 지속적 유지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는 연구개발 전문연구소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들 기관은 연구위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연구계약자 명단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¹²⁾

최근 산업체의 연구계약이 대학으로부터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연구성과의 비밀유지 여부에 대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신뢰도 때문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넷째, 연구위탁자의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는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조직 및 연구구성원의 공공적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수요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반면,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수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

다섯째, 조직 및 연구의 자율성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기업에 비해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 이는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중·소규모의 조직으로 조직적인 탄력성의 유지가 가능한 점과 연구계약을 통해 수행가능한 연구과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출연기관으로 모기업이나 정부의 보조금 혹은 사회적인 기부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연구계약에 의해 조직을 유지해야 하므로 재원적 측면에서 조직의 안정성이 가장 떨어지고 있는 연구주체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재원의 공급구조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재원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많은 경

〈표 4〉 유형별 연구기관의 특성 비교

특 성	유 형 별 연 구 기 관			
	정부출연	대학부설	기업부설	비영리 민간법인
주된 연구분야	응용연구(공공 및 국가전략분야)	기초연구	개발연구 (상업적 활용연구)	응용/개발연구 (연구계약)
연구기간	장기	중장기	단기	중단기
연구비 규모	대	중	대·중·소	중·소
위험도	고	고	저	중
비밀유지도	중간	개방	폐쇄	폐쇄
수요반영도	중·저	저	고	고
연구원수	다	소	중	소
자율성	중	대	소	대
재원안정성	대	중	대	소

자료: 문광순, 1993을 참고로 작성

우 제한된 전문성만을 가지므로 연구개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와 함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가진 많은 장점을 상쇄하는 주요한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타 연구주체와 비교한 것이 〈표 4〉이다.

V. 결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연구소의 한계부분을 보완하고 완충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체제에서 잠재력이 높은 연구주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나 산업체의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기술에 관련된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에 대한 OECD규범이나 WTO체제 등 국제환경변화에 대해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은 연구조직으로 국가연구개발체제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업출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단점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재원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고 또한 소수의 연구인력을 이루어 진 경우 제한된 연구개발능력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설립 유도 및 육성방안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익성격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정부와 기업이 아닌 제삼자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된다 는 점이다.

이와같은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연구조직의 설립을 촉진하는 제도와 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보조금의 확대 등 이들 연구 조직의 장점을 보장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1995
- 2)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각년도
- 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년 일본과학기술백서, 1995
- 4)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업기술연구 조합의 효율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1989
- 5) 김갑수, 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 6) 문광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비영리 순수민간출연연구기관의 역할, 세계 한민족 종합학술대회, 1993. 8.
- 7) 정선양,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5
- 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민간기술연구소 운영편람, 1995.2.

- 9) Albert H.Teich and Jill H.Pac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USA*, Longman, 1986
- 10) Thomas Wolf, *Managing A Nonprofit Organization*, Simon & Schuster, 1990
- 11) 通産政策廣報社, 産業技術振興施策便覽 1994, 日本, 1994

【주】

- 1) 비영리 민간법인은 정부조직의 성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선 혹은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비정부적 실체로 운영되므로 이하에서는 민간을 생략하여 비영리 법인이라 칭한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정부소속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민간비영리 연구기관(Non-profit research Institute)을 가리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민영연구기관을 가리킨다.
- 2) 정부조직은 정부소속의 조직을 의미하며, 우리의 경우는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을, 미국등의 경우는 연방연구소나 정부연구소를 지칭한다. 우리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조직은 아니나 정부가 주된 자금원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조직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독일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학술진흥협회와 프라운호퍼 응용연구촉진협회 그리고 대규모 연구기관(GFE)을 들 수 있다.
- 3) 본 고에서 다루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은

법인격을 띤 조직을 가리킨다. 이하에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라는 용어는 바로 비영리 민간연구법인과 동의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 4)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을 기타 비영리 법인과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지원 및 각종 조세적 혜택측면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타 비영리 법인과 구분해 차별화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점이다.
- 5) 문광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비영리 순수민간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1993. 8월, 세계한민족종합학술대회
- 6) 1982년 현재로 조사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연구기관(Nonprofit Research Institute)의 숫자는 총 232개로 나타나고 있다. Albert H. Teich and Jill H. Pace etc.,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USA*, Longman, 1986, pp. 165~167 참고.
- 7) 김갑수, 일본의 과학기술체제와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4, pp. 26~27.
- 8) 특히, 비과세 대상인 '공공이익'과 관련된 전유성을 가진 연구(Proprietary Research)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부

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기관의 비영리조세조항(Institute's non-profit tax status)에서는 연구가 공공이익과 관계된다고 간주될 때만 전유성 있는 연구가 허용된다(such proprietary research is permissible only if the research is deemed to be 'in the public interest')고 규정하고 있다.

- 9)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등 비영리민간법인 연구기관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10) '93년 현재 비영리 민간법인은 국가 연구개발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1,014억 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자체사용 817억 원을 제외한 197억 원은 다른 연구개발 주체가 사용한 금액이다.
- 11) 일본연구기관과 민영연구기관의 관계 및 비중 추이는 김갑수, 전제서 pp. 21~28 을 참고 바람.
- 12) 미국의 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연구계약자의 약 90%가 명단의 공개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lbert H. Teich and Jill H. Pace, etc (1986), p. 166.